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실태 관련 정기감사 결과

('15. 12. 한국소비자원 감사실)

Ⅰ. 감사 실시 개요

□ **감사배경** : '14. 9. 신청사 이전 후 장거리 출장 및 공용차량 증가로 차량의 운영 및 관리, 배차 등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모색

□ **감사대상** : 공용차량(20대) 운영 및 관리 실태(감사대상기간 : '14. 9. ~ '15. 10.)

□ **감사내용** : 공용차량 구입·운영, 관리 및 배차의 적정성 여부

□ **감사기간** : '15. 11. 16. ~ 12. 4.

Ⅱ. 감사결과

□ 감사총괄

지적사항	처분종류	요 지
1.「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 지침」준수 부적정	시정요구	○「공용차량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라 모든 차량의 운영현황 공개 및 부적절한 공무용 표시 조항 개선
2.배차관리 부적정(배차 후 운행관리 부재)	시정요구	○ 차량 배차관리 엄격화 필요 →배차후 차량반납시 소망시스템상 운행내역 입력 의무화 또는 차량운행일지 작성 등 운행관리 강화 →소망시스템의 배차관리 메뉴상 실배차 기간(1일 초과 배차) 반영 및 방문기관이나 출장지 등 행선지와 승차인원수(성명) 구체적 입력 필요
3. 배차량 및 차량 운행 거리 증가로 교통사고위험 상시 노출	개선권고	○ 임직원들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책 강화 필요 →전담 운전원 확보, 운전자보험이나 인사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해 장거리 출장 및 출퇴근시 교통사고 대비 직원보호책 강구 →사고경위 등 원인규명을 위한 공용차량에 블랙박스 장착 필요

□ 지적내용 및 처분요구(관련부서 : 기획조정실 경영지원팀)

제목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처분요구 종류
1.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지침” 준수 부적정	○ 소비자원은 공용 차량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차량관리부서에서는 동 지침에 따라 차량의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의 경우 소비자원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지침에 담고 있고, 일부 조항의 경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예시1)** 「공용차량운영 및 관리지침」 제4조 제3항에서는 “차량 크기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용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원 차량은 행정자치부의 「공용차량관리규정」에 적용받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절한 내용이고, 실제 부착하지도 않음.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26085호, 2015.2.3. 행정자치부)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2항에 의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제1조, 제3조)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함. **(예시2)** 「공용차량운영 및 관리지침」 제4조 제4항에서는 “소비자원 모든 차량의 운영현황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원 홈페이지에서는 모든 차량의 운영현황을 공시하지 않고, 임원용 차량(3대)만 공시하고 있어 동 지침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음. ※접근경로 : 소비자원 홈페이지-정부3.0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전용차량운영현황 - 공시내용 : 차량번호, 차종, 구입일자, 구입금액, 월단위 유류 사용량 및 유류비 집행현황 **<조치사항>** **□ 「공용차량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라 모든 차량의 운영 현황 공개 및 부적절한 조항 개선** ○ **(차량 운영현황 공시강화)**동 지침에 따라 모든 차량의 운영현황을 공시 여 투명성 강화 필요 ○ **(관련조항 삭제)**우리원 공용차량은 공무용 표시가 불가하므로 해당 조항 삭제 필요	시정요구

제목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처분요구 종류
2. 배차관리 부적정(배차후 운행관리 부재)	○ 일반직원들이 공용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망-업무시스템-경영정보-경영지원-차량관리-배차신청관리」를 통해 배차신청 후 차량관리부서인 경영지원팀의 승인을 받아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있음. ○ 배차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하여 배차신청을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어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여 관리하고 있음. ※소망시스템상 배차신청등록 내용(항목) - 신청항목 : 신청일자, 신청자, 신청부서 - 배차신청등록 : 운전자, 차량구분(승용차, 승합차), 예약일, 운행시간, 사용목적, 행선지, 승차인원수, 승차인 성명, 비고 ○ 그러나 차량의 운행을 마친 후에는 차량파손이나 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키(key)만 반납하는바, 세부적인 운행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할 수 없음. - 차량 인수 및 반납할 때 주행거리, 통행료, 주유여부, 주차료 발생시 주차장소, 원외 야간 주차시 차량관리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음. - 행선지도 서울, 대구 등으로 입력하여 구체적 행선지를 파악할 수 없음. ○ 뿐만 아니라 본원의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후 서울이나 수도권 배차후 당일에 복귀하기 어렵거나 장거리 운행으로 2일이상 배차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도 현행 소망시스템상 배차관리에서는 당일 배차만 기록할 수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조치사항>** **□ 차량 배차관리 엄격화 필요** o **(배차후 운행관리 강화)** 차량 인수 및 반납시 각 주행거리, 통행료 유무, 야간 원외 주차시 주차장소, 주유시 주유액 등을 신고토록 하여 차량의 이력관리가 되도록 개선 필요(예, 소망시스템상 차량반납시 운행내역 입력 의무화 또는 차량운행일지 작성 등) o **(실배차 기간반영 및 구체적 운행내용 입력)**소망시스템의 배차관리 메뉴상 실배차 기간(1일 초과 배차) 반영이 필요하고, 방문기관이나 출장지 등 행선지와 승차인원수(성명)을 구체적으로 입력 필요	시정요구

제목	지적내용 및 조치사항	처분요구 종류
3. 배차량 및 운행 거리증가로 교통사고 위험 상시 노출	○ 소비자원은 '14. 9. 본원의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후 소비자민원 업무, 조사업무, 시료확보 등 고유 업무는 물론 대정부·국회 업무상 서울 등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 대상 장거리 출장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우리원 공용차량의 운행을 통한 출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체 공용차량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장도 증가하는 실정임. – 차량보유대수 증가 : 총 20대(이주후 5대 구입) – 월평균 주행거리 : 1,959km(최소 611km, 최대 4,228km) – 월평균 배차건수 : 195.6건, 배차율 84.6%, 탑승자수 : 평균 2.8명 – 관외(사무실 소재 밖의 광역시 · 도) 배차 : 62.9%(1,723건/2,739건, 관내 37.1%) ○ 이와 같이 차량을 이용한 업무출장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도 증가하는 실정이고, 실제로 우리원 공용차량은 '14. 9. 이후 8회에 걸쳐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바, 향후 이와 같은 교통사고 위험을 대비한 임직원의 생명안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험에 대한 예방책 마련 필요. **(사례) 트럭에 의한 후미 추돌사고로 차량 대파(인사사고 무)** – 임원 차량이 '14.12.5.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상행선)에서 대형 트럭에 의해 차량의 후미가 추돌되는 사고를 당하여 차량이 대파되어 수리비 견적이 22,300천원이 나옴. ※(참고)2015.4.15. 궁내동 톨게이트 부근에서 통근버스(남부터미날행)가 다른 관광버스에 의해 후미 추돌사고를 당하여, 버스 맨 뒷좌석에 탑승한 직원 4명이 상해(전치 3–8주)로 치료중임. **<조치사항>** □ **임직원들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책 강화 필요** o **(교통사고 대비 임직원 보호책 강구)**장거리 출장 및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임직원의 신체적·경제적 안전책 마련 필요(예시, 전담 운전원 확보, 운전자보험이나 공용차량에 대한 인사사고 대비 별도 상해보험 가입 등) o **(공용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사고시 사고경위 등 원인규명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장치로서 블랙박스 장착 필요	개선권고